

# 평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평창 군 의 회 의 건 청 취 안

의 안 번 호	299
------------	-----

제안연월일 : 2024. 06. .  
제 안 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기존 공공청사의 용도보다 주민편의 시설 등의 사용이 주용도이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설치 운영될 계획이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평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군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
- 위 치: 평창읍 중리 355-1번지 일원 (평창읍사무소 부지)
- 면 적: 6,600m<sup>2</sup> → 0m<sup>2</sup> 감) 6,600m<sup>2</sup>

### 나.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 2024. 05.: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과업착수
- 2024. 05.: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입안
- 2024. 06.: 주민공람·공고
- 2024. 06.: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 2024. 06.: 군의회 의견청취
- 2024. 07.: 평창 군계획위원회 심의
- 2024. 07.: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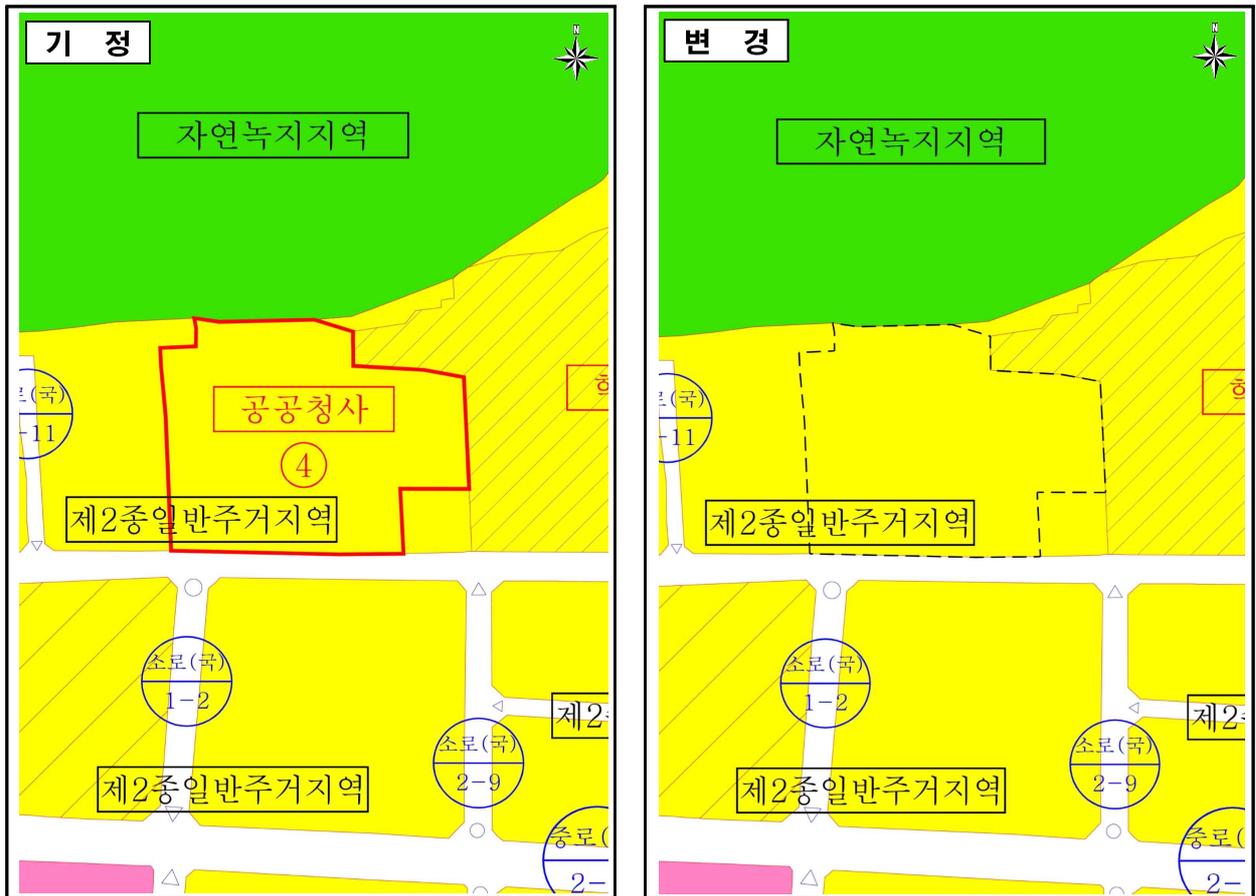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4	평창읍사무소	공공청사	평창읍 중리 355-1 일원	6,600	감)6,600	-	15.03.03 (평고15-24)	평창도시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평창읍사무소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지</li> <li>- 면적 : 6,600㎡</li> </ul>	평창읍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기존 공공청사의 용도보다 주민편의시설 등의 사용이 주용도이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설치 운영될 계획이나 군계획시설(공공청사)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폐지하고자 함.

###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도



## 라.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평창읍 중리 355-1번지 일원 (평창읍사무소 부지)
- 면 적: 6,576m<sup>2</sup>
- 사업기간: 2022년~2025년
- 소요예산: 186억원 (기금 141억원, 군비 45억원)
- 추진부서: 허가과
- 사업내용
  - 평창읍사무소는 34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주민편의시설 및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능 수행에 제한이 있어 읍사무소를 신축
  - 평창읍민의 부족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의 학습·복지, 상담 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의 집약화와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이용편의 제공 및 청소년 학습복지환경 향상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고
공사명		평창읍 행복플러스학습센터 조성사업			
대지위치		평창군 평창읍 중리 355-1번지 일원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공공업무/주민공동), 수련시설			
대지면적		6,576.00m <sup>2</sup>			
건축면적		1,673.48m <sup>2</sup>			
건폐율		25.45%	(법정:60%이하)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4층(높이:17.70m)			
연면적	지상	4,814.70m <sup>2</sup>			
	지하	336.17m <sup>2</sup>			
	소계	5,150.87m <sup>2</sup>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4,814.70m <sup>2</sup>			
용적률		73.22%	(법정:250%이하)		
공개공지		354.12m <sup>2</sup>	5.39%	(법정:5%이상)	
조경면적		1,253.22m <sup>2</sup>	19.06%	(법정:15%이상)	
주차 대수	구분	법정	계획	설치기준	법정주차 대수의 452.94%
	제1종근린생활시설	10.23대	77대	300m <sup>2</sup> 당 1대	
	수련시설	5.95대		300m <sup>2</sup> 당 1대	
	합계	17대	77대	-	
설비 개요	열원방식	공조 : GHP + 전열교환기 / 에너지자립 : 태양광시스템			
	승강기 대수	승객용 : 1대			



## 마. 향후계획

### ○ 운영계획

구분	운영주체	세부 운영방안
행정복지 센터 (1층)	평창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09시~18시</li> <li>• 이용대상: 평창읍민</li> <li>• 공간운영: 민원실 및 회의실 등</li> <li>• 주요 단체 대상 실내활동 개최 등</li> </ul>
평생학습 공간 (2층)	평창읍 주민자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09시~21시</li> <li>• 이용대상: 전체 주민대상</li> <li>• 프로그램 운영방향: 지역주민의 학습능력이 우선이 되는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주요 단체 대상 실내활동 개최 등</li> </ul>
청소년문화 공간 (3층)	평창군 청소년문화 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09시~18시(화요일~토요일)</li> <li>• 이용대상: 초등 4학년~고등 3학년</li> <li>• 공간운영: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동아리 지원</li> <li>• 기타사항: 귀가차량 지원, 청소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청소년상담 복지공간 (4층)	평창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시간: 평일 13시~21시, 방학 09시~18시</li> <li>• 이용대상: 초등 4학년~고등 3학년</li> <li>• 공간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지원 원스톱 서비스 연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li> </ul>

## 바. 기대효과

### ○ 정주여건 조성 및 학령인구 유출 완화

- 평창군 청소년 교육인프라 확충 정책과 연계, 평창군 청소년에 대한 양질의 교육지원으로 인접 도시 지역으로의 학령인구 유출 완화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청소년 및 평창군민의 행복지수와 거주 만족도 향상을 통한 정주인구 유입 도모

○ 시설 집적화에 따른 운영 관리 및 예산 투자 효율성

- 행복플러스학습센터~평창초등학교 도보 5분, 평창중학교 도보 1분, 평창고등학교 도보 10분으로 반경 500m 도보권 내 입지한 높은 접근성
- 공공자산인 평창읍 행정복지센터(읍사무소)를 문화·복지·교육기능 시설과 복합화하여 개별 시설 분산투자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지역 내 예산투자의 효능감을 증대

○ 일자리 창출 정량적 효과

- 직접고용효과: 12명
  - \* 청소년문화의집(2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8명), 평생학습관(2명)
- 간접고용효과: 40명/년
  - \* 청소년 및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고용

### 3. 참고사항

#### 가. 위치도



## 나. 현장사진

KEY-MAP



대상지 현황사진

V.P. 01



V.P. 02



V.P. 03



## 다. 관계법령

### ○ 법적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공공청사 폐지를 위한 군관리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임

### ○ 계획수립절차



# 관계법령 발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 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 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라목·바목·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금융업소에 한정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아동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라목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